

재벌과 국가권력에 의한 화교 희생의 한 사례 연구

- 아서원(雅絃園) 소송사건 -

이 용 재*

목차

들어가는 말

I. 雅絃園의 연혁

II. 雅絃園 소송사건

1. 雅絃園 소송의 발생 배경
2. 雅絃園 소송의 전개과정
3. 雅絃園 소송의 쟁점과 그 처리 과정

III. 雅絃園 소멸의 원인

IV. 雅絃園 소송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선

맺음말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雅絃園 소송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소송사건을 소개하고 조명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雅絃園 소송사건은 한때 한국의 최고급 중국음식점이자 화교(華僑) 경영 중화 요릿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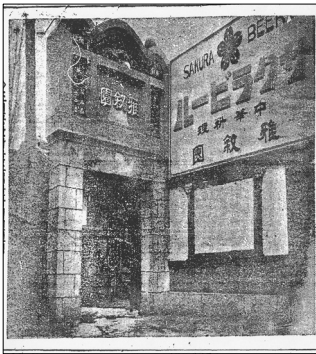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의 상징적 존재였던 雅敍園이 예상치 못하게 한국 굴지의 재벌인 롯데와 소송에 휘말리고, 그 결과 찬란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사회와 한국화교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사건이다. 이 雅敍園 소송은 1969-1974년까지 무려 5년간 한국 굴지의 대기업 롯데와 雅敍園 주주 측 사이에 雅敍園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는데, 당시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 雅敍園이 지닌 명성, 엄청난 시세,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 벌어졌던 법정 싸움이라는 점 등, 여러 흥미 요소로 인해 당시 한국사회나 화교사회 모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했다. 雅敍園 소송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雅敍園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 소송 사건의 내면을 세밀히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과 측면들이 작중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과 재벌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온 한국적 현실, 재벌이라는 사회적 강자에 의한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 '화교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강탈' 등과 같은 한국화교들의辛酸했던 역사와 삶, 화교에 대해 차별적이고 편협한 인식을 가진 한국인의 자화상, 화교 간의 갈등과 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雅敍園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모습을 동시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다름 아닌 雅敍園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雅敍園 소송사건은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흔한 법정 소송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국현대사뿐 아니라 한국화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지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중요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雅敍園 소송사건은 지금껏 사건의 과정이나 의미가 세간에 그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특별한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雅敍園 소송사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소송사건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데 본 논문의 목표를 두고 있다.

I. 雅敍園의 연혁

雅敍園은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누구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중국 요릿집이자, 한국에서 중국 요릿집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화요리 음식점의 상징적 존재였다. 동시에 雅敍園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무대이자 최고급 사교 장소이기도 했다. 雅敍園은 물론 어지간한 서울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의 요리를 먹어보았을 정



[그림 2] 雅敍園의 정경

도로 뛰어난 요리로도 유명했지만, 사실 雅敍園이 한국에서 명성을 날리게 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정치적 모임이나 활동을 많이 해서, 雅敍園이라는 세 글자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雅敍園은 한국사회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으며, 雅敍園의 변천사가 곧 한국사회 변천사의 일부가 되는 중요성을 갖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 중화요리 음식점의 한 획을 그은 雅敍園은 山東省 福山縣 출신의 徐廣彬(호는 鴻洲, 이후 徐鴻洲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짐)씨에 의해 창립되었다. 徐鴻洲 씨는 20세 때인 1899년에 한국에 이주해왔

으며, 서울에 정착한 徐鴻洲 씨는 화교 잡화상과 음식점 경리직원으로 7년을 일했다. 1907년 수중에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자 친구 20여명과 공동으로 雅絃園을 설립했는데, 당시 화교사회에서 요리점 창업 방식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합자회사였던 셈이다. 물론 徐鴻洲 씨가 가장 큰 출자자였으며, 음식점 경영도 徐鴻洲 씨 본인이 맡았다. 雅絃園이라는 음식점 이름은 徐鴻洲 사장이 그의 조부와 부친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와 조합한 것이다. 雅絃園이 최초 개업했을 당시의 위치는 (구) 반도호텔(현 호텔롯데) 옆 주차장, 건평 50평 남짓한 2층 건물이었다. 雅絃園은 개업 직후 뛰어난 요리 맛으로 서울에서 곧바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¹⁾. 북경요리(魯菜)도 雅絃園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해방 전후까지 맛에 있어 雅絃園은 당시 또 다른 서울의 유명한 중국 음식점인 大觀園²⁾과 쌍벽을 이루었다. 그러나 맛의 취향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어 雅絃園은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광둥요리로, 大觀園은 기름기 많은 산둥요리로 이름이 났었다. 두 음식점은 고객층도 서로 달라 大觀園은 주로 서민층에 인기가 있었고, 雅絃園의 고객들은 상당히 명망 있는 고위관리나 높으신 분들이었다.³⁾ 또한 雅絃園은 밤에는 장안의 기생 60명을 고용해 손님을 접대해 일급 요정 구실도 했으며, 이 때문에 해질 무렵이면 매일 오후

1) 雅絃園 창업주 徐鴻洲 사장의 경영방침은 ‘요리 제일주의’였으며, 요리에 대한 그의 열성은 남달랐다. 그는 일류 주방장을 구하기 위해 몇 달씩 중국에 체류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찾아낸 사람이 바로 한국 중화요리 주방장계의 대사부로 불리는 李秉科 씨였다. 이에 대해서는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台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民國72年), 71-73쪽 참조.

2) 중국음식점 大觀園은 서울 관수동에 있었으며, 1910년 山東省 출신의 王 某氏에 의해 설립되었다. 雅絃園·泰和館과 함께 서울의 3대 중국음식점으로 명성을 떨쳤다. 大觀園은 약 60여 년간 운영되다가, 1977년 서울도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철거되었다.

3) “사라지는 서울의 명물(6),” 『조선일보』, 1973.05.09일자

식당 앞 을지로 일대가 기녀들이 타고 온 인력거와 자동차들로 가득해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1934년 말 당시 일본인 재벌 노구치가 원 식당자리에 반도호텔을 짓게 되자, 換地하여 식당을 이전하였다. 새로운 식당 부지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사이의 땅(을지로 1가 180-4,5번지)이었으며, 이곳이 1970년 문을 닫을 때까지 雅絺園이 있던 자리였다. 새로운 부지에 雅絺園 식당을 신축하고 정식으로 이전한 것은 1936년이였다. 신축 이전 과정에서 雅絺園은 토지를 담보로 2만원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400여 평에 3층짜리 벽돌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전해 신축한 후로 雅絺園은 대규모 1급 요릿집으로 거듭났고 더욱 기세를 올리며 크게 성장했다. 1950년대 말 음식점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지자, 다시 한층을 더 증축해 4층 건물로 확장했다. 이렇게 확장된 雅絺園은 한국화교들의 중화요리점 중에 규모가 가장 컸다. 9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었고, 시설 또한 최신식이어서 당시 한국에서 최고급 중화요리 음식점이었다. 식당 구조는 1층은 전부 온돌방이었고, 2층에는 온돌방과 홀이 있었다. 온돌방은 대부분 10~15인을 수용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이 따로 있었다. 3·4층은 언제라도 큰 홀이나 식당으로 개조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결혼이나 경로잔치, 친목종친회 등은 모두 이 두 개 층을 사용했다. 당시 결혼식 특히 화교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雅絺園에서 치러졌다. 또한 이 때 雅絺園의 조직에도 변화가 생겨나, 정식으로 주식회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주주에는 윤 씨·한 씨 등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26명이었고, 주식은 대지와 건물 각각 1백주씩 모두 200주였다. 대출자자들 가운데 10명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고, 徐鴻洲 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흔히 한국 신문에서는 雅絺園이 1936년 말에 창업한 것으로 말해

지고 있으나⁴⁾, 이는 사실 착오이다. 이 시기는 雅絃園이 식당터를 옮겨 새로 개업한 시기를 말한다.⁵⁾

해방 후 雅絃園이 가장 번창했던 전성기는 한국전쟁 휴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였다. 1954년부터 약 2년 동안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외국부대(미군)가 雅絃園의 주요 고객이었고, 그 이후에는 자유당과 공화당 정부인사와 정치가들의 사교장소로 각광받았다. 雅絃園을 자주 찾은 정계와 관계, 경제계 인사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당시의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국회의장, 장기영 부총리, 정일권 총리, 김철호 기아그룹 회장 등이 고객 명단에 올라 있었고, 中華民國의 대표적인 석학 林語堂과 孫文의 아들이자 대만 행정원장을 지낸 孫科 씨도 雅絃園을 찾은 적이 있었다. 1967년을 전후해 雅絃園의 하루 매출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였다. 당시 일류 회사의 평사원 월급이 2만원 정도였으니, 장사가 어느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⁶⁾ 장사가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도 매우 많이 준비해야 했다. 재료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 한 번에 1년간 쓸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했다. 구매량도 대단히 많아 어떤 때는 시장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래에 있어 신용도 좋아 雅絃園과 거래했던 상점들은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雅絃園의 장사가 쇠락해 과거의 영화를 잃었을 때는 학생과 같은 뜨내기손님도 받았고, 일반음식점처럼 외상거래도 했다. 또한 쇠락했을 무렵에는 ‘김치값’ 때문에 한국인 손님에게 고소당한 사건으로 큰 고욕을 치르기도 했다.⁷⁾ 비록 이 ‘김치값’ 고소 사건은 손님이 고소를

4) “雅絃園 落成”, 『每日申報』, 1936.12.17일자

5) 秦裕光, 앞의 책, 74쪽

6)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85쪽

취하함으로써 해결되기는 했지만, 요리값 때문에 고소를 당한 최초의 일이라 당시 중화요리업계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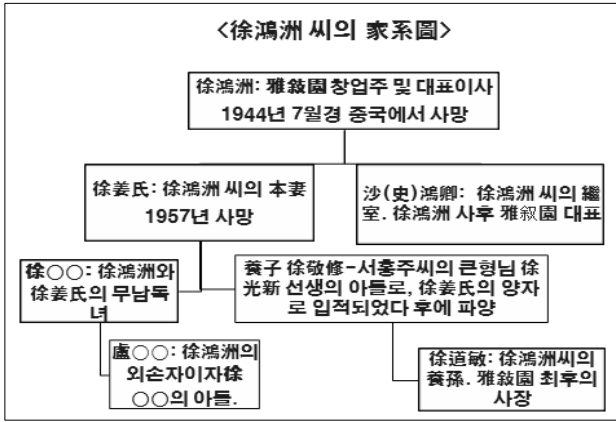
이처럼 대한민국 굴지의 최고 중국음식점이자 상징으로 존재해왔던 雅絃園은 1970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다소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였다. 雅絃園 창업주인 徐鴻洲 씨의 외동딸인 徐○○ 씨⁸⁾가 1969년에 롯데재벌에 6,000만원이라는 험값에 雅絃園 건물을 매각해 버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雅絃園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약 5년간 雅絃園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雅絃園 소송사건이다. 이 소송은 롯데 측의 최종 승리로 매듭지어졌는데, 소송의 최종 결말과 함께 6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찬란한 영광과 명성을 누렸던 雅絃園은 술한 애환과 비사를 남기고, 한국과 화교사회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동시에 雅絃園의 몰락과 기구한 운명은 화교 운영 중국음식점들의 쇠락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⁹⁾

II. 雅絃園 소송사건

1. 雅絃園 소송의 발생 배경

주식회사 雅絃園과 롯데그룹 사이에 雅絃園의 부동산 소유권을

- 7) “김치 한 접세 50원 中國料食집 被訴, 不當利得返還 청구”, 『경향신문』, 1964.09.10일자.
- 8) 본 논문은 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 민감하고 예민한 소송사건의 특성상 본고에서는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경우 인권과 명예 보호를 위해 부득이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 9) 이상에서의 雅絃園 연혁에 대한 기술은 秦裕光, 앞의 책, 70-80쪽, 秦裕光, “화교”, 『중앙일보』, 1979.10.29- 1979.11.02일자, “사라지는 서울의 명물(6)”, 『조선일보』, 1973.05.09일자 기사를 참조.



[그림 3] 徐鴻洲 氏의 家系圖

둘러싼 법정 다툼이 발생한 것은 1969년 2월 雅絨園의 창업주 徐鴻洲 씨의 무남독녀 (盧)徐○○¹⁰⁾씨가 그녀의 아들 盧○○과 함께 공모해 주주들의 동의 없이 당시 을지로 1가 181-4, 5에 위치한 대지 4백2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백69평, 당시 시가로 5억에 상당하는 雅絨園 건물을 6,000만원이라는 헐값에 롯데(당시 롯데 측 계약자는 신○○)에 매각한 일에서 정식으로 시작된다.¹¹⁾ 그러나 사실 雅絨園 건물의 이러한 매각은 雅絨園의 재산권을 둘러싼 雅絨園 내부의 갈등과 분쟁, 곧 당시 徐鴻洲 씨의 유산을 두고 徐鴻洲 씨의 무남독녀 (盧)徐○○ 씨와 徐鴻洲 씨의 養孫 徐道敏 씨 간에 불거졌던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소송이 벌어지게 된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시의 雅絨園 사장은 徐道敏 씨였는데, 그는 창업주 徐鴻洲 씨의 養

10) 중국인에게는 출가여성은 남편의 성을 이름 앞에 붙이는 관습이 있다. 徐○○씨는 1924년경 盧氏家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 앞에 盧姓을 붙인 것이다.

11) 이 사건을 심의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雅絨園은 1969.2.18일 매도, 1969.2.21자로 신○○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孫이었다. 徐鴻洲의 직계자손인 친딸 곧 (盧)徐○○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養孫인 徐道敏 씨가 雅絨園의 사장이 된 데에는 유산상속에 있어 ‘出家한 딸’은 인정치 않고, 同宗의 養子를 우선시했던 중국의 전통적 유산상속 관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徐道敏 씨는 자신이 養孫이라는 점을 내세워 雅絨園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경영을 장악하고 雅絨園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徐道敏 씨 혹은 雅絨園 측에서 (盧)徐○○ 씨의 상속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음식점 운영에도 出家外人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저히 배제한 데에 있었다. 게다가 (盧)徐○○ 씨가 雅絨園 주주의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나 영업상의 이익 배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다. 이로 인해 (盧)徐○○ 母子는 당시 경제적으로 꽤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자신들이 徐鴻洲 씨 유산에 대한 정당한 법적 상속인이자 雅絨園 소유자라고 생각한 (盧)徐○○ 씨와 그녀의 아들 盧○○씨는 자신들의 권리나 대우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찾으려는 과정에서 雅絨園이 徐鴻洲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徐鴻洲 씨의 印章도 자신들에게 있는 점을 이용해 雅絨園의 소유권을 먼저 (盧)徐○○씨 명의로 등기 이전한 다음, 다시 雅絨園을 매마침 국내 최대의 36층 호텔인 ‘호텔롯데’를 건립하려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던 롯데에 매각했던 것이다.¹²⁾

12) 필자는 雅絨園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나 관련 인물을 수소문하던 중, 뜻밖에도 어느 익명 화교(이 분은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분으로부터 진화통화를 통해 雅絨園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雅絨園의 내부 분쟁은 이 분이 들려준 말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물론 이 분은 盧○○ 씨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분의 말을 100% 객관적 사실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徐鴻洲 씨의 유산과 그 상속권을 둘러싸고 (盧)徐○○ 씨 측과 養孫 徐道敏 사장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하여 雅絃園 측 내부의 재산권 분쟁이 그 발단이 된 雅絃園 소송사건은, 이제 한국의 재벌 롯데와 주식회사 雅絃園 간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 雅絃園 측에서는 雅絃園의 소유권과 명의가 (盧)徐○○ 母子에 의해 주주들도 모르게 롯데 측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크게 경악했고, 주주들 중 어느 누구도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행위에 수긍하지 않았다.¹³⁾ 雅絃園 측에서는 즉시 사장 徐道敏, 주주대표 宮延齡 등을 포함한 주주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상의한 다음 (盧)徐○○ 母子의 매매행위는 터무니없으며 법률적으로 무효행위라 주장하고, 주주 26명 가운데 宮延齡 씨 등 4명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 씨와 (盧)徐○○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롯데 측에서도 雅絃園을 상대로 ‘가옥명도소동’을 제기함으로써, 雅絃園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雅絃園 소송은 1969-1974년 5년 동안 상·하급 법원을 오르내리고, 승패를 뒤바꾸며 전개되었다.

2. 雅絃園 소송의 전개과정

법정 싸움으로 번진 雅絃園 소송사건의 1심 재판은 1969-1970년에 이루어졌다. 이 소송안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 雅絃園 측에서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① 雅絃園은 원래 徐鴻洲 씨를 포함한 26명 주주들이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공동소유 재산이며, 편의상 등기부 상에 徐鴻洲 1인 명의로 신탁(위탁)등기를 한 것일 뿐 결코 徐鴻洲 일개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다. 또한 徐鴻洲는 1944년

13) 雅絃園 측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난 결정적 화근이 된 것은, 雅絃園 주주들이 徐鴻洲 씨 사후 소유권 명의를 주식회사 雅絃園으로 이전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 게다가 徐鴻洲의 인감도장도 (盧)徐○○ 씨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盧)徐○○ 母子가 이점을 이용해 雅絃園을 주주들 몰래 롯데에 매각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7월경에 고향 山東省으로 귀국한 뒤 생사불명으로 되어있는 부재자로서 아직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徐鴻洲 명의의 재산에 대한 유산상속과 호주상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설령 徐鴻洲 씨가 사망했다고 해도, 徐鴻洲와 그의 本妻 사이에는 딸 (盧)徐○○만 있고 호주상속을 할 아들이 없어 徐敬修 씨를 養子로 입적했으니, 出嫁外人인 (盧)徐 씨에게는 유산상속권이 없으며 상속할 경우 오히려 養子인 徐敬修에게 상속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徐○○는 아들 盧○○과 공모해 徐鴻洲가 1945년 2월 15일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고¹⁴⁾, 또한 (盧)徐○○ 씨가 유산상속자인 것처럼 꾸며 유산상속과 호주상속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¹⁵⁾, 이를 다시 롯데(신○○)에 넘겨주었다. 부재자를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또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정당한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雅絨園 소유권을 (盧)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뒤이어 이루어진 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② 설령 徐鴻洲 씨가 사망했고 또 (盧)徐○○가 그의 정당한 유산 상속인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모두 외국인이므로 <외국인토지법> 규정에 의해 상속할 경우에도 내무부 장관의 취득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런데 (盧)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雅絨園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에 의해 취득할 수 없으며¹⁶⁾, 따라서 신○○ 역시 (盧)徐○○로부터 땅을

14) 盧○○은 외조부인 徐鴻洲가 45년 2월 山東省에서 사망했다는 증명서를 한성화 교협회로부터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雅絨園의 소유권을 어머니 (盧)徐○○ 씨 앞으로 이전 등록했다.

15) 실제로 (盧)徐○○와 盧○○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 한국 신문에도 기사화된 적이 있다. “管理 두 中國人有罪, 雅絨園 登記造作 해 팔아”, 『경향신문』, 1974.07.19일자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盧)徐〇〇가 徐鴻洲의 정당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中華民國 民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徐鴻洲 씨가 사망한 후부터 그의 본처 徐姜 씨는 자신이 徐鴻洲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행세해 왔으며, 나아가 1955년 10월 27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徐鴻洲의 雅絃園 주식 및 소유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盧)徐〇〇와 沙(史)鴻卿¹⁷⁾씨에게 증여하는 등¹⁸⁾ 유산 전체에 대한 상속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盧)徐〇〇의 상속권을 침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盧)徐〇〇의 상속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권이 소멸된 다음에 이루어진 상속

-
- 16) 실제로 (盧)徐〇〇와 盧〇〇은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첫 번째 케이스로 치안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기도 했으며, 이 사실 역시 한국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땅사기 외인 첫 구속. 雅絃園터 가로채려던 중국인”, 『조선일보』 1969.01.26자, 조간7면. 기사 내용은 “25일 치안국 외사과는 외국인토지법이 발효된 후 첫 케이스로 중국요정 雅絃園 대지를 유산 상속한 것처럼 꾸민 盧〇〇을 구속하고 그의 어머니 노서(盧徐·62)씨를 공모혐의로 입건했다. 노는 자기의 조부인 徐鴻洲 씨 명의로 된 雅絃園 재산(대지 4백24평, 4억 8천 여 만원)을 이사회 의 동의 없이 지난 15일 자기 어머니 노서씨 명의로 유산을 상속한 것처럼 꾸미고 이에 협조한 한국인 세무사 한 씨에게 雅絃園땅 일부인 18평(4백5만원)을 떼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토지법은 내무장관의 허가 없이 명의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로 되어 있다.
- 17) 沙(史)鴻卿 씨의姓은 관련 자료에 따라 沙 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史 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성씨가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8) 서울지방법원 관결, 1970.07.02 선고, <69가4652, 소유권 이진등기 말소 소송> 및 <69가5079 가속명도 소송> 판결문을 보면 徐姜 씨는 죽기 전에 徐鴻洲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雅絃園에 대한 지분 $\frac{45.5}{200}$ 중에 沙(史)鴻卿에게 $\frac{20}{200}$ 을, 그리고 자신의 친딸 (盧)徐〇〇에게 $\frac{25.5}{200}$ 를 각각 분배해주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다.

등기는 물론, 그 뒤 이루어진 신○○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다. ④ (盧)徐○○와 신○○ 사이에 이루어진 雅敍園 매매계약은 (盧)徐○○가 궁박한 상태에서 또한 그녀의 경술 내지 무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104조에 서 규정한 무효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매매계약에 따른 신○○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당연히 원인무효라는 것이 雅敍園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雅敍園 측의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송 제1심을 담당했던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① 雅敍園이 주주들의 공동소유이며, 徐鴻洲 단독 명의로 위탁한 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② 徐鴻洲의 딸 (盧)徐○○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雅敍園측 주장도, 그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한성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사망증서에 따르면 徐鴻洲는 1942년 1월 4일에 병사했으므로 本妻인 徐姜 씨와 딸 (盧)徐○○에게는 공동상속권이 있으며, 이들의 본국법인 中華民國 民法(제1138조, 제1144조)에서도 출가한 딸은 제1순위로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盧)徐○○가 雅敍園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에게 판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中華民國 民法에 의하면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입양한 養子나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에 罷養된 養子는 상속권이 없다고 해석되므로¹⁹⁾, 養子 徐敬修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雅敍園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雅敍園 측의 주장대로 徐鴻洲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취득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²⁰⁾ 그러나 (盧)徐○○가 徐鴻洲의 재산인 雅敍園

19)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徐姜 씨는 徐鴻洲 사후인 1951년에 徐敬修 씨를 양자로 입적했다가, 그녀가 죽기 전인 1955년에 罷養한 것으로 되어있다.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토지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인 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따라서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盧)徐○○의 상속이 무효라거나 매도행위가 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④ 徐鴻洲가 사망한 후 유산은 그의 本妻 徐姜 씨와 딸 (盧)徐○○가 각기 1/2씩 상속했고, 또 徐姜 씨가 죽은 다음에는 徐姜 씨의 재산마저 (盧)徐○○가 상속했으므로, 徐姜 씨가 (盧)徐○○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雅絺園 측 주장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雅絺園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하고 또 (盧)徐○○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盧)徐○○의 처분행위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다.²²⁾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은 롯데 승소판결을 내렸고, 雅絺園 소유권은 롯데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면 패소한 雅絺園은 이 판결에 따라 즉각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雅絺園 측이 패소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雅絺園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첫째, (盧)徐○○가 雅絺園 소유권을 자기

20) 판결문에서 말하는 <외국인토지법>이란 1968년 7월 3일에 개정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말하며, 동법 제5조 1항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대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이 유산으로 토지를 상속할 경우에도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당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토지 소유에 관해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3년 안에 내국인에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2) 이상의 기술 내용은 서울지방법원 판결, 1970.7.2선고. <69가465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 <69가5079 가옥명도소송> 판결문을 참조한 것이다.

명의로 이전등기 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망증명서에 의문점이 많다. 徐鴻洲가 사망한 것이 기정사실이긴 해도, 중국 山東省에서 일어난 일이라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게다가 제출된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도 여러 가지였다. 雅絨園 측에 따르면 徐鴻洲는 1944년 7월에 중국으로 귀국했는데,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가 1942년 1월 4일 또는 1945년 2월 5일에 사망한 것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냥 막연하게 45년 8월 15일 이전이라고만 기재된 것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성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이처럼 혼란스러운데, 이런 점에서 볼 때 (盧)徐○○가 제출한 서류는 허위라고 雅絨園 측은 주장했다.²³⁾ 둘째, 徐鴻洲의 본처 徐姜 씨가 남긴 공정증서였다. 徐鴻洲가 사망한 후인 55년 10월 27일에,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인 본처 徐姜 씨는 변호사를 통해 雅絨園을 주주 26명[대표: 沙(史)鴻卿]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한다는 公正證明을 公證人에게서 작성했다. 그런데 법적 효력을 갖는 이 공증서에 대해 1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徐姜 씨가 사망할 당시 딸 (盧)徐○○와 繼室 沙(史)鴻卿 등 26명의 주주에게 유언으로 주식을 배당했으며, 이 유언에 따라 딸 (盧)徐○○씨도 약 1/8의 주식비율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盧)徐○○ 본인도 雅絨園이 공동재산임을 인정해온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盧)徐○○는 1967년 7월 14일 주주 이사회에서 雅絨園이 공동재산임을 시인했고, 절대 제3자에게 임의로 팔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 공정증서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²⁴⁾ 하지만 1심에선

23) 雅絨園 측에서는 이에 따라 (盧)徐○○와 그녀의 아들 盧○○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 母子는 1974년 한국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24) 한국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1967년 7월 14일 雅絨園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盧)徐○○를 포함한 주주 및 이사들이 모여 徐○○가 雅絨園에 대한 재산관리인으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넷째, 당시 법원의 감정가격으로 2억8천77만원, 시가로는 5억으로 평가되는 雅絃園을 단돈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을 보면, 雅絃園을 진정한 자기재산으로 생각한 행위가 아니다. 이상이 雅絃園 측에서 항소한 주된 이유였다.²⁵⁾

그리고 雅絃園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심의한 서울고등법원은 (盧)徐○○가 주주들의 눈을 피해 시가 2억7천5백6십5만8천원에 상당하는 雅絃園을 헐값 6,000만원에 매각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²⁶⁾ 盧徐 씨와 그녀의 실질적 대리인인 盧○○은 ①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상속한 재산이 내무부 장관의 취득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3년 내에 반드시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雅絃園을 빨리 팔아버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또 그들은 雅絃園 재산을 횡령하려 했다는 혐의와 고소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이 신문에까지 보도되고²⁷⁾, 雅絃園 주주 측이 雅絃園을 매각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세우고 있었고, 소유권 명의신탁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해오는 등 당시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② (盧)徐○○가 62세의 노파로서 無學이고 雅絃園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세태에 어두운 사람이었다. ③ 매수인 신○○은 (盧)徐○○와 雅絃園의 주주 측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과 (盧)徐○○ 씨와 盧○○이 시가에 어둡고

로 선임된 것을 승인하되 그 조건으로, (盧)徐○○은 이 사실을 중화민국 주한 대사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雅絃園은 주주들의 공동소유라는 것과 (盧)徐○○은 임시 관리인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일체 불법으로 인정하고 일체 승인하지 않기로 한다. (盧)徐○○도 이에 찬성해 결의서에 기명날인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5) 秦裕光, “화교-雅絃園의 송사”, 『중앙일보』, 1979년 11월 3일-4일자 참조.

26)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는 1971년 9월 22일에 내려졌다.

27) “外人土地法 위반- 雅絃園 管理 中國人 盧씨 拘束”, 『동아일보』, 1969.01.25일자, “땅 詐欺外人 첫 구속- 雅絃園터 가로채려던 中國人”, 『조선일보』, 1969. 01.26일자 등등

혈값에라도 서둘러 팔아야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혈값에 살려고 그 대금을 시가의 1/4에도 못 미치는 6,000만원으로 깎고, 원래 1억5천만 원에 매도하려 했던 盧○○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또한 매각대금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먼저 경유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해 盧徐 씨와 롯데 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민법104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판결하고²⁸⁾, 롯데는 건물을 雅絃園 측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雅絃園 측과 雅絃園을 아끼는 華僑들은 모두 공정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으며.²⁹⁾ 2년간 문을 닫아야 했던 雅絃園을 다시 열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롯데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 측의 상고로 雅絃園 소송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앞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매매가격과 시가와 차이만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경솔·무경험 또는 궁박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했고, 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한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있다. 특히 매도인이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하여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경솔·무경험은 그

28) 이상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1.9.22선고. <70나 2471 가옥명도소송>, <70나 23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판결문 참조.

29) “雅絃園訴訟案新發展, 高院判定原告勝訴, 根據繼承無效·產權屬股東會”, 『韓中日報』, 1971.10.06일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하며,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본 건(근 雅敍園 소송건)에 관해 살펴보면 ① 매매행위는 (盧)徐○○의 아들인 盧○○이 (徐어머니 盧徐○○를) 대리하여 매도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盧○○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수년간 중국요리점을 경영한 사회경험을 가진 당시 39세의 장년이며, 또한 (盧)徐○○나 盧○○ 스스로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盧○○의 매매 행위가 경솔이나 무경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 궁박한 곤궁상태에 관해 살펴보더라도 서울고법이 채택한 증인 왕○○씨의 증언³⁰⁾ 외에 盧○○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雅敍園 부동산을 (盧)徐○○ 명의로 상속 등기한 것이 횡령이 되고, 이에 따라 雅敍園 측에서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고 또 이러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점에 있어서도, 기록상 (盧)徐○○는 (雅敍園이) 자기의 상속재산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횡령고소 사건이나 신문보도로 인해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상속한 雅敍園 상속 재산은 3년 이내에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나, 3년이라는 시간은 매각하기에는 장시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들로 볼 때 매도인 (盧)徐○○ 씨가 절박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신○○가 계약 당시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매수인 측을 보면 위 (盧)

30) 왕 씨는 “雅敍園 부동산을 금 6,000만원이란 헐값에 팔아치운 것은 생활이 궁박하여 우선 살고보자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법원 판결문, 1972.4.25 선고, <71다2287> 판결문 참조. 또한 필자가 雅敍園 관련 자료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쉬리엔 씨도 盧○○이 헐값에 雅敍園을 팔아치운 이유는 “그가 실업자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徐○○는 대리인인 盧○○으로 하여금 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수개 회사에 매도를 제의했으나 그 위치·형태·용도에 있어 호텔이나 사무실을 신축하기에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낮다는 사실, 본건 건물이 약 40년 전에 건축되어 노후하고 그 건물을 주식회사 雅絃園이 점유해 사용 중이었으므로 그 명도 상에 어려움이 있어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본건 부동산(雅絃園)의 매매를 두고 盧○○과 신○○ 양측 간에 약 2개월 이상의 시일을 소비하며 매주 1회 정도 쌍방회합이 있었고 충분한 숙려 끝에 계약조건과 가격 등이 결정된 사실, 또 신○○는 雅絃園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아니라 (盧)徐○○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매수 후의 가옥명도 소송 등을 고려해 매수한 사실, 매도인 측에서 매도를 열망했고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신○○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상대방의 경솔·무경험, 또는 곤궁함을 이용해 매매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부동산을 시가의 1/4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무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³¹⁾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雅絃園 매매계약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승패는 다시 한 번 뒤바뀌었고, 실상 雅絃園의 운명은 이 때 결정지어졌다. 사건을 재심리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뜻에 따라 롯데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고³²⁾, 雅絃園 측

31) 이상의 판결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 1972. 4. 25선고. < 71다2287 > 판결문 참조.

32)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본건 부동산(雅絃園)이 서홍주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탁관계는 수탁자인 徐鴻洲의 상속인인 (盧)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盧)徐○○가 이를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 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까지 넘겨준 이상, 피고(雅絃園) 측은 원고(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盧)徐○○ 명의의 상속등기는 물론 (盧)徐○○의 처분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당

에서 대법원에 재차 항고해보았지만 최종 판결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雅絺園이 중국인 주주로 설립된 주식회사 雅絺園의 소유라고 하는 원고(雅絺園 측 주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雅絺園이 주주들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이를 매각하고, 등기 이전까지 끝마친 것에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³³⁾는 판시였다. 이리하여 5년을 끌어왔던 雅絺園 소송은 결국 롯데 측의 최종 승리로 매듭지어졌고, 이 최종판결이 내려진 1974년 4월 9일은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雅絺園 최후의 날이 되었다. 雅絺園이 사라진 자리에는, 최신택 36층짜리 현대식 건물인 호텔롯데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상에서 雅絺園 소송의 전개과정과 雅絺園이 한국사회 및 화교사회에서 사라지게 된 역사를 살펴보았다. 법적 판결이 법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과연 공정하고 정당했었는지 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치열했던 소송에서 롯데가 승소하고 雅絺園 측이 패소함으로써 雅絺園 측 사람들과 화교들이 받은 타격과 피해는 상당히 컸다. 필자는 雅絺園 소송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소송 당시 雅絺園의 마지막 사장이었던 徐道敏 씨의 여동생 쉬리옌(徐麗顏)씨를 만날 수 있었다.³⁴⁾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당시 雅絺園에는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물론 직원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다. 그런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3.8.21 선고, <72나 1156> 판결문 참조

33) 대법원판결, 1974.4.9 선고. <73다 1452> 판결문 참조.

34) 雅絺園과 관련된 본 논문의 준비과정에서 필자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雅絺園 소송과 관련된 자료나 인물이 부족하고,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한성화교협회 사이트 게시판에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다행히 한성화교협회로부터 쉬리옌 여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11년 11월 9일 쉬리옌 여사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雅絺園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쉬리옌 여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데 雅絨園이 최종 패소함으로써 이들은 권리나 재산상에 있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연히 雅絨園 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그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雅絨園과 관계를 맺고 거래해왔던 많은 화교 상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雅絨園 소송 사건이 華僑들에게 끼쳤던 영향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3. 雅絨園 소송의 쟁점과 그 처리 과정

이상에서 다소 장황한 느낌은 들지만, 雅絨園 소송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대두되었던 사안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쟁점들의 처리과정을 검토해보고, 그 의문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雅絨園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크게 4가지였다. 첫 번째 쟁점 사안은 (盧)徐○○가 徐鴻洲 씨의 유산에 대해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雅絨園 측에서는 (盧)徐○○씨는 1920년대 초에 이미 盧氏家와 결혼한 出嫁外人이므로 정당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상속권은 오히려 養子인 徐敬修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설사 유산 상속권을 갖는다고 해도, 그 상속권은 養子 徐敬修와 공동으로 가진다고 주장했다. 雅絨園 측에서 상속권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이들이 상속권의 계승 문제에 있어 출가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同宗 養子를 우선시했던 중국의 전통 상속 관습을 강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雅絨園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법원은 모두 徐鴻洲 씨의 무남독녀로서 직계 혈친인 (盧)徐○○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며, 養子 徐敬修는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누구에게 유산상속권이 있는 가라는 상속권자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법원의 판

단이 타당하고 옳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준거점이 된 中華民國 民法에서도 기혼이나 미혼을 불문하고 여성에게도 재산상속권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다.³⁵⁾ 더구나 당시 養子로 주장되었던 徐敬修 씨는 원래 徐鴻洲 씨 死後 그의 本妻인 徐姜 씨가 아들이 없는 관계로 입적했다가, 그녀가 죽기 전에 罷養했기 때문에³⁶⁾ 법적으로 養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따라서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³⁷⁾

雅絃園 소송 과정에서 두 번째 핵심 쟁점이 된 사항은 (盧)徐○○ 母子의 유산상속 행위의 <외국인토지법> 위반 여부와,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당시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규정을 근거로 雅絃園 측은 (盧)徐○○의 유산 상속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원의 입장은 (盧)徐○○가 유산 상속의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35) 중화민국은 1930년 12월 민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딸에게도 기혼이나 미혼을 불문하고 모두 남자 형제와 같이 동등한 재산 상속권을 부여했다. 중국의 전통적 상속 관행과 상속법의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손승희, <상속관행에 대한 국가권력의 타협과 관철>, 인천대학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제2회 국제학회, 『국가권력과 관행』 자료집, 127-153쪽 참조.

36) 徐敬修를 罷養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徐姜 씨가 徐敬修 씨를 罷養한 것은 아마도 그녀가 갖고 있던 雅絃園 지분을 자신의 친딸인 (盧)徐○○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37)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徐姜 씨가 徐敬修 씨를 과양했음에도 불구하고, 雅絃園 측에서는 여전히 그를 양자로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가받지 못했다고 해서 유산상속 자체가 무효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인토지법>이 雅絃園과 같은 부동산 건물(토지가 아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건물인 경우에도 취득허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盧)徐○○는 불허가처분을 받았기에 동법 제7조의 규정³⁸⁾에 따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盧)徐○○와 롯데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및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세 번째 쟁점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바로 雅絃園이 徐鴻洲 개인소유인가 아니면 주주들의 공동합자로 이루어진 법인소유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상 본 사건의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고, 雅絃園 소송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자 전제가 되었던 사항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雅絃園 주주 측에서는 雅絃園은 엄연히 26명의 주주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이루어진 공동소유 재산이며, 편의상 徐鴻洲 이름으로 위탁 등기해 놓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공정증서, 공소장, 공증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참고로 雅絃園 주주 측에서 雅絃園 건물이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에 제출했던 雅絃園의 부동산 지분명세표를 제시해본다.³⁹⁾

38) 1968년에 개정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제7조의 규정에는 “1.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계승인이 이 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이를 3년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 위 부동산 지분 명세표는 서울지방법원 판결, 1970.07.02선고, <69가5079 가옥명도>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표1) 雅敍園 부동산 지분 명세서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	$\frac{45.5}{200}$	이○○	$\frac{7}{200}$	오○○	$\frac{1}{200}$	모○○	$\frac{4}{200}$	강○○	$\frac{4.5}{200}$
이○○	$\frac{34}{200}$	장○○	$\frac{12}{200}$	왕○○	$\frac{1}{200}$	엽○○	$\frac{1}{200}$	삼○○	$\frac{1}{200}$
장○○	$\frac{21}{200}$	손○○	$\frac{1}{200}$	사○○	$\frac{1}{200}$	유○○	$\frac{3}{200}$	○○원	$\frac{15.5}{200}$
궁○○	$\frac{20}{200}$	왕○○	$\frac{3}{200}$	서○○	$\frac{1}{200}$	손○○	$\frac{2}{200}$		
서○○	$\frac{13.5}{200}$	사○○	$\frac{2}{200}$	두○○	$\frac{1}{200}$	전○○	$\frac{2}{200}$		

상기 부동산지분표에서 가장 많은 지분율인 $\frac{45.5}{200}$ 가 바로 徐鴻洲 씨의 本妻 徐姜 씨가 徐鴻洲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이후 徐姜 씨는 죽기 전 유산 $\frac{45.5}{200}$ 를 각각 沙(史)鴻卿(徐鴻洲의 후처)에게 $\frac{20}{200}$ 을, 그리고 $\frac{25.5}{200}$ 는 친딸 (盧)徐○○에게 분배해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徐姜 씨 死後인 1957년 7월 28일에 주주들의 입회하에 徐鴻洲의 雅敍園에 대한 지분 $\frac{55.5}{200}$ 에 대한 논의를 다시 거쳐 徐○○에게 $\frac{28}{200}$, 沙(史)鴻卿에게 $\frac{14}{200}$, 徐敬修에게 $\frac{13.5}{200}$ 씩 분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雅敍園 소송 당시 (盧)徐○○의 실질적 지분율은 雅敍園 전체 지분 가운데 14%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frac{172}{200}$ 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설사 徐鴻洲의 모든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친딸 (盧)徐○○에게 있어 그녀가 단독으로 徐鴻洲 지분을 전부 상속한다 해도 그 지분율은 $\frac{55.5}{200}$, 곧 27.5%에 불과한 셈이다. 雅敍園 측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자료를 통해, 雅敍園은 개인소유가 아닌 주주

들의 공동소유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雅敍園 주주들의 이러한 주장을 한국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부동산(곧, 雅敍園)이 피고 회사들의 주주들의 소유로서 徐鴻洲 단독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되는 을제7,8,9호증(공정증서, 공소장, 공증계약서), 동제10, 11, 12, 17, 19, 20, 21, 22호증(각 증명서), 동 제23호증의 2(신탁해제통지서), 동 제24호증(임시 이사회 회의 기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의 증인 ○○○, 환송 전 당심(고등법원)의 증인 ○○○ 외 각 일부 증언, 환송 후 당심의 ○○○ 피고 보조 참가인 본인 신문 일부 결과, 원심의 가사사건(서울 가정법원 <69느1309>, <동원69브8>), 횡령사건에 대한 각종 형사사건 기록들(<70고5697>)의 일부 결과는 당 법원이 믿지 않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증서를 피고(곧 雅敍園 주주)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피고 주주들이 동 부동산(雅敍園)을 徐鴻洲에게 명의 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⁴⁰⁾는 것이 한국법원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판단이었다. 즉 雅敍園은 단독 명의로 신탁한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법원 측의 입장이었다. 나아가 雅敍園이 설령 주주들의 공동소유라 해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매각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넘겨준 이상 雅敍園 주주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⁴¹⁾. 이와 같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여기서 판결내용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의 문제를 알기불가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는 여기서 雅敍園 측 입장에서 한국법원의 결정 사항 중 가장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판결,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던 판결이 바로 이

40) 본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3.8.21 선고, <72나1156>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위에서 제시한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서울중앙민사법원, 대법원)이 동일하게 취했던 입장이었다. 다만 두 번째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1971.9.2) 雅敍園이 공유재산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41) 대법원 판결, 1974.4.9.선고, <73다1452> 판결문.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쉬리엔(徐麗顏) 씨의 말에 따르면, 雅絃園 측 인사들은 한국법원의 판결이 대단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 지금도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 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雅絃園은 분명 여러 주주들의 공동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에 의해 그것도 주식 비율이 50%에 훨씬 못 미치는 한 사람에 의해 雅絃園 전체가 매각 처분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처분 행위가 어떻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는지 하는 점이 가장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본 사안에 대한 한국법원 측의 판단도 서로 모순되었다. 雅絃園 측에서는 雅絃園 소송 당시에 공동재산임에도 雅絃園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해서 (盧)徐○○와 盧○○ 두 사람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형사 사건을 심의했던 한국법원(서울 형사법원)은 이들 모자의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법적 처벌을 내렸다.⁴²⁾ 그러나 민사사건이었던 雅絃園 소송건의 경우는 한국법원은 雅絃園이 (盧)徐○○ 모자의 사적 재산임을 인정해 그들의 매각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한국법원의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판단이 이렇게 서로 달랐는데⁴³⁾, 한국법원 측의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은 필자의 입장에서조차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雅絃園 소송과정에서 네 번째 쟁점이 된 사항은 (盧)徐○○ 및 그를 대리한 盧○○과 롯데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행위가 민법 104조에 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

42) “雅絃園 혈값에 팔아넘긴 두 中國人에 執猶 선고”, 『동아일보』, 1974.07.19일자

43) 형사적 판단 뿐 아니라 雅絃園과 관련된 가사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 1969.05일 선고, <69노 1309> 판결문에서도 雅絃園이 공동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사항은 雅絃園 측과 롯데 간의 법정 다툼의 승패를 뒤바꾸었을 만큼, 본 소송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雅絃園 측에서는 (盧)徐○○ 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고, 무지하고 세태에 어두웠기 때문에 6,000만원이란 험값에 雅絃園을 매각한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단도 서로 엇갈렸다. 제1심과 제3심을 판결했던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입장은 매매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雅絃園 소유권이 한국인→중국인(화교)→한국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소유로 귀착되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한국법원이 판결했을 것이며, 그 법적 결정의 옳고 그름을 필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盧)徐○○와 롯데 그룹 간에 성사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 사안의 특성상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과 판단이 전적으로 법원(판사)에 맡겨져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확고한 객관적 증거나 결정적인 법정자료에 의해서가 아닌 정황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사항이라, 완전히 법원 측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과 재량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본 쟁점사항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단 즉 1심 및 3심과 제2심간의 판단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네 번째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 벌어진 雅絃園 소송과정에서 얼마든지 雅絃園 측이 불리하거나 편과

적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었던 셈이며,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은 결과적으로 롯데 측에 승소판결을 내려주었다.

Ⅲ. 雅絃園 소멸의 원인

앞 절에서 雅絃園 소송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로 雅絃園이 한국사회와 화교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雅絃園은 왜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필자가 만났던 쉬리엔 씨는 雅絃園 측이 패소한 이유로 크게 2가지 점을 언급했다. 첫째는 雅絃園 측이 소송 당시 ‘돈이 없었다(沒有錢)’는 것이었고, 이를 雅絃園이 패소한 가장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당시 雅絃園은 소송이 시작된 후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비용’을 마련해야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법적 소송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법적 투쟁과 싸움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의 소송상대는 거대한 자금력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롯데재벌이었다. 雅絃園 측 입장에서 볼 때 롯데는 소송을 벌이기에 그들이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강한 상대였고, 또 이런 측면에서 雅絃園 소송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기 이전에 ‘많은 돈을 지닌 재벌’과 ‘가난하고 미약한 보통사람’간의 소송 싸움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쉬리엔 여사 뿐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화교들이 “‘에휴!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 많은 재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쉬리엔 여사가 꼽은 패소의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바로 ‘외국인(華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결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쉬리엔 여사는 비록 이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증거는 없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당시 재판과정에 참여했던 화교들은 한국 법관들이 외국인인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무시하고, 상당히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처리를 한다는 느낌과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법원의 판결과 내용이 외국인인 자신들에게 대단히 불공평하고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당시 한국법관들이 ‘혐오스럽다(可惡)’라고 말했다. 심지어 쉬리엔 여사는 법관들이 롯데 측에 매수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한국법원과 법관에 대한 그녀와 화교들의 불신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또한 雅敍園 소송 사건은 한국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라 치외법권의 대상도 될 수 없어, 모국 중화민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어떤 외교적 도움을 기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나아가 당시 대사관측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이나 움직임도 없었다.

쉬리엔 여사가 언급한 이유 외에, 필자의 생각으로 당시 한국정부와 롯데그룹 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 역시 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당시 한국정부는 수출 외에도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관광사업과 호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부신했다.⁴⁴⁾ 특히 이 분야에 외국인의 직접 또는 합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여

44) 한국 정부는 관광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1971년 1월 18일자 법률 제2285호로 <관광사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여건들을 성숙시켜 나가려고 했다.

러 곳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뜻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전해졌는데, 롯데 측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권유를 官界 경로를 통해 받게 되었다.⁴⁵⁾ 즉 관광호텔의 민영화·국제화·대형화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정부는 롯데 측에도 이 부문에 참여해줄 것을 강하게 권고·설득했고, 롯데 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호텔롯데’가 건립되었던 것이다.⁴⁶⁾ 롯데 측의 ‘호텔롯데’ 건립과 자본 투자 결정을 당연히 환영한 것은 비단 박정희·이후락·유창순·김종필·정일권 등 당시 권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고 자세였을 뿐 아니라⁴⁷⁾,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반응이자 분위기이기도 했다.⁴⁸⁾ 이처럼 호텔롯데의 건립이 관광사업 진흥과 외자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정부당국은 롯데 측에 정책상에 있어 모든 지원이나 혜택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호텔롯데가 순조롭고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공동에 있던 당시 국유호텔인 반도호텔 부지, 국유재산인 (구)국

45) 주식회사 호텔롯데 편, 『호텔롯데20년사』(서울: 금석인쇄, 1993), 103쪽.

46) 롯데가 호텔건립에 착수하게 된 것은 롯데그룹의 오너 신격호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였다. 이 만남에서 오갔던 대화의 내용은 이러했다. “(박정희)그런데 내가 신 사장 좀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도호텔 말이요. 잘 알다시피 반도호텔은 관광공사가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국영으로는 안 돼. 그 옆에 있는 국립도서관도 불하해줄 테니 신 사장이 맡아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어서 경영해주시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겠소. 신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후락 대사의 사인을 받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각하의 뜻하시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정목,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서울: 한울, 2009년), 239쪽 참조. 이처럼 당시 서울의 명물로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대형호텔을 짓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강했고,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관철되었다.

47) 손정목, 앞의 책, 240쪽 참조.

48) 롯데가 자본을 투자해 호텔을 짓기로 한 일은 당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外資導入 심의委(위) 롯데, 36層 호텔 건립 借款·外人投資 6천4백萬弗”. 『경향신문』, 1973.04.25자, “半島호텔-舊雅絃園-국립도서관터에 日 롯데서 대규모 호텔”, 『조선일보』, 1973년 4월 26일자.

립중앙도서관 부지, 산업은행 부지 등을 롯데 측에 불하해주었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주었고, 호텔이 들어설 예정 부지를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과 제도로 적극 후원해주었다.⁴⁹⁾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들은 호텔롯데의 건설에 있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⁵⁰⁾ 이처럼 한국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서울의 명물로 대형 호텔을 짓겠다는 당시 절대적 통치권자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또 한국정부가 호텔롯데의 건설을 외자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상황이, 호텔롯데가 들어설 예정부지에 위치해 있던 雅敍園을 둘러싼 재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처럼 당시 롯데와 정부가 상당히 공고하고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에서, 雅敍園 측이 롯데와 배후에서 그들을 비호해주던 국가권력이라는 두 강력한 집단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雅敍園 측은 소송 당시 여러 면에서 힘겹고 어려운 법적 소송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운도 대단히 나쁜 편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설령 雅敍園 소송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사실 당시의 정부정책과 호텔롯데의 건립추진으로 인해 한국국지의 중국 요릿집 雅敍園은 어쩔 수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의 도심재개발과 도시계획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973년 건설부 고시로 ‘특정가구정비지구’라는 제도를 신설했다.⁵¹⁾

49) 당시 정부는 롯데의 호텔 건립을 도와주기 위해, <외자도입법>, <특정가구정비지구>라는 제도의 신설,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률을 시한법으로 반포했다. 당시 정부는 한 기업을 위해 3개의 관련 법령까지 변경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롯데 측에 베풀어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256-256쪽 참조.

50) 주식회사 호텔롯데 편, 『호텔롯데20년사』(서울: 금석인쇄, 1993), 117쪽 참조

51)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가지 내의

정부는 롯데가 호텔을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주기 위해, 호텔건설 예정 부지인 을지로 1가·남대문로 2가·소공동 일부지역 3만5천m²의 땅을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해 주었다. 이 지역이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것은 1971년 8월 1일 건설부 고시 제315호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서 특정가구정비지구 제1호 지정이었다. 당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에는 반도호텔·한일은행·산업은행·서울은행·국립도서관·雅敍園·반도조선 아케이드·민유지 등 소공동(현 을지로) 일부지역이 포함되었다.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그리고 시청에서 승인 제시한 조건의 건축물을 건축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건축하거나 시장 직권으로 제3자에게 건축을 의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가구정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게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한 가구(街區, block)를 단위로 하여 그 가구 내에 들어갈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정가구정비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18조 10항 신설) ②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가구로 약칭)로 지정된 가구 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는 특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지구 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가구 내에서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258-259쪽 참조.

에는 토지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은 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게 건축물을 지어낼 능력이 되지 않았다. 소유한 토지면적이 소규모였고 보유한 자본도 빈약했기 때문이다.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정이 있는 후 호텔롯데는 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부지 매입을 서둘렀고, 동국제강(1973.12), 반도호텔(1974.6.3), 雅絃園(1974.4.9), 국립도서관(1974.11.20), 반도조선아케이드(1974), 기타 민간부지(최종완료 1975.4) 등을 별로 큰 잡음 없이 모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실상 위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⁵²⁾

바로 ‘특정가구정비제도’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강력히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雅絃園은 설사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사라질 운명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雅絃園은 이 제도에 따라 당시 서울시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재건축하거나 아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터인데, 雅絃園의 능력이나 여건상 서울시 규정에 맞게 재건축하거나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제3자에게 강제 매입되거나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雅絃園의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운명을 만나는 것이 어찌면 차라리 낳았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호텔롯데에서는 ‘반도특정지구’ 내에 있는 부지들을 당시 시가로 매입해 주었고⁵³⁾, 雅絃園도 그나마 정당한 응분의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52) 손정목, 앞의 책, 259-260쪽 참고.

53) 주식회사 호텔롯데 편, 『호텔롯데20년사』(서울: 금석인쇄, 1993), 129쪽.

Ⅳ. 雅絃園 소송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선

雅絃園 소송사건은 당시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 雅絃園의 명성, 엄청난 시세,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었다는 점 등, 여러 흥미로운 요소로 인해 재판이 벌어진 5년 내내 당시 한국사회나 화교사회 모두에서 상당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雅絃園 소송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소송의 최종적 결말에 대한 반응은 한국인과 화교 양측이 매우 상반되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 우리 한국인들은 이 雅絃園 소송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당시 한국 언론들은 모두 雅絃園 소송의 전개과정과 승패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한국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당시 雅絃園 소송과 관련된 언론 보도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雅絃園 소유권 싸움-한국인 勝訴판결”, 『매일경제』, 1970년 07월 03일자.

“中國음식점 雅絃園소송 韓國人에 勝訴 판결”, 『경향신문』, 1970.07.03일자.

“雅絃園 소유권 한국인에”, 『중앙일보』, 1970.07.03일자.

“雅絃園 所有權 紛爭 韓國人 勝訴”, 『조선일보』, 1970.07.03일자.

“雅絃園所有紛爭 韓國人勝訴 地法, 辛씨의 明渡訴訟 인정”, 『동아일보』, 1970.07.03일자.

“1억짜리 雅絃園 소유권 訴訟, 韓國人에 勝소판결”, 『한국일보』, 1970.07.03일자.

“雅絃園 소유권...대법서 재상고 기각, 롯데 측에 勝소확정”, 『조선일보』, 1974.04.10일자.

“雅絃園 소유권분쟁 롯데 측에 勝소판결”, 『조선일보』, 1973.08.22일자.

“雅絃園 所有訴 四年 만에 辛씨에 勝訴 判決, 서울高法”, 『동아일보』,

1973.08.21일자.

“롯데側に 勝訴 확정, 雅絃園 所有權……大法서 再上告 기각”, 『조선일보』, 1974. 04. 10일자.

“롯데側 勝訴 확정”, 『매일경제』, 1974.04.10일자

위에 열거한 雅絃園 소송과 관련된 언론기사의 제목을 보면, 당시 한국 언론들이 한결같이 雅絃園 소유권을 둘러싼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분쟁에서 한국인이 승리하고, 그 소유권이 한국인에게 넘어온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환영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한국 언론들은 雅絃園 소송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 소송이 중국인을 상대로 한 롯데(더 정확히 말하면 辛○○ 일개인)의 승리였음에도 모두 ‘한국인’이라는 용어, ‘한국인 승소’ 사실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를 기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당시 한국 언론의 이러한 반응이나 어조는 마치 한국인이 중국인과의 전쟁이나 양국 간에 벌어진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반응과 흡사해 보인다. 한국 언론의 이와 같은 반응 양상은 당시 한국인들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당시 한국인들은 雅絃園 사건을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진 단순한 민사소송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양국 민족 간의 대결로 인식했고,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시선과 정서로 雅絃園 소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족주의 정서와 시선 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항이었을 것이고, 또 한국인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한국인이 당연히 승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⁵⁴⁾ 물론 한국인 입

54)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언론들은 롯데 측이 승소했을 경우는 어김없이 모두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반대로 롯데가 패소했을 당시에는 오직 조선일보만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시선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 정서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이 소송사건에 내재해 있는 다른 중요한 측면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로서의 재벌의 횡포, 그리고 그에 의한 힘 없는 약자의 희생, 외국인(華僑)의 재산쪼미야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리 사회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이자 주변인인 화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 등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雅絃園 소송에서 한국인이 승소한 사실, 雅絃園이 한국인 소유로 넘어오게 된 사실에 환희를 느꼈던 반면, 다른 한쪽 편이었던 한국화교 사회는 큰 실망과 아픔을 맞보아야 했다. 雅絃園 소송사건을 바라보는 화교들의 시선과 반응은 한국인과는 완전 상반되었다. 필자가 만났던 슈리엔 씨는 이 雅絃園 사건은 자신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가슴 속의 커다란 울분과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하며(그녀는 중국어 ‘窩囊(응어리, 한)’이라는 말로 그녀의 심정을 대변했다), 雅絃園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한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해야 할” 한국법률이 자신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런 감정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⁵⁵⁾ 가끔 대만대표부가 호텔롯데에서 주최하는

짙막한 단신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했을 뿐 (“雅絃園 원주인 소유로. 패소했다 15개월 만에 승소”, 『조선일보』, 1971.10.14일자), 그 외의 다른 매체들에는 그에 관한 기사가 없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당시 언론들은 雅絃園 사건에 있어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었는지, 곧 한국 언론에게는 한국인의 승리 여부 가 가장 주된 관심 사항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찬회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지금도 호텔롯데를 갈 때마다 마음이 대단히 불쾌하고 편하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이자 雅絃園 최후의 사장이었던 徐道敏 씨의 경우 雅絃園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을 잃게 된 일로 생긴 울화병과 지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 외에도 宮延齡 씨를 비롯한 당시의 雅絃園 주주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아예 한국을 떠나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雅絃園 소송 결과에 대한 이들의 불만과 분노가 어느 정도 심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雅絃園 소송은 이들에게 한국이란 ‘화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너무도 강한 나라’, ‘화교가 밭붙이고 살기 힘든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불만과 분노, 상실감과 좌절감은 비단 雅絃園 측 관계자들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화교들의 시각이자 반응이었다. 그들은 소송으로 인해 화교사회의 상징적 존재의 하나였던 雅絃園이 사라진 사실에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고, 그들에게 雅絃園 소송의 최종 결과는 사실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화교 재산을 침해한 폭력적 행위이자,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비쳐졌다.⁵⁶⁾ 그래서 雅絃園의 주주들은 물론 대다수의 화교들은 지금도 雅絃園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화교 재산 강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으며, 잊을 수 없는 한이자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한다.⁵⁷⁾

그들에게 있어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비록 雅絃園 사건에 대해 내

55) 쉬리엔 씨는 한성화교중학교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지금은 퇴직하고 ‘韓國華僑民服務委員會’의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6) 秦裕光, “화교-雅絃園”, 『중앙일보』, 1976.10.26일자.

57) 국백령, “우리는 왜 짜장면 밖에 팔 수 없었는가?”, 『월간조선』, 1991년 8월호, 178-179쪽.

심으로야 불만과 억울함을 강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면의 감정들을 대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엄혹한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화교들의 처지에 서 그와 같은 자신들의 울분이나 억울함을 외부로 강하고 크게 표출할수록, 오히려 문제만 더욱 커질 뿐이고 억압만 더 심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雅敍園 측 주주들도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더 이상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기회를 봐서 나중에 다시 소송해보자”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울분을 마음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이라는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설령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숨죽인 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화교의 고단하고 힘겨웠던 삶을 잘 보여준다.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사 및 한국화교 역사에서 한 중요 사건이었던 雅敍園 소송 사건에 주목하여, 雅敍園 소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고, 소송의 전개과정과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무엇이었고 그 쟁점들이 한국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그리고 雅敍園이 소멸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雅敍園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와 화교들의 상반된 시각과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雅敍園 소송 사건에 대해 다각적인 조명을 시도해 보았다. 본고의 고찰에서 드러났듯 雅敍園 소송사건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법적 소송이라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엄밀하고 냉정히 말하면 재벌 및 그와 긴밀하게

결탁했던 국가권력이라는 두 강대한 세력의 힘 앞에 화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雅絃園의 그와 같은 운명은 곧 한국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이자 우리 사회의 경계 밖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화교의 고난의 역사와 신산했던 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화교의 역사에서 雅絃園 사건이 갖는 독특하고 특수한 성격이자, 雅絃園 사건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雅絃園 사건에 대한 본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직면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관련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남아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雅絃園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과 측면을 동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코드와 양상들을 그 내부에 內藏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면에서 雅絃園 소송사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연구해 볼 만한 충분히 있는 가치가 있다. 본고는 그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본고가 雅絃園 사건의 복잡한 측면을 온전하게 보여주거나 규명해 내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雅絃園 소송 사건이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한 시각에서 검토되고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아서원(雅絃園), 한국화교, 재벌롯데, 호텔롯데, 국가권력, 중국 요릿집, 소송, 한국법원, 특정가구정비제도

(논문투고 : 2012.5.20 / 논문심사완료 : 2012.6.1 / 논문게재확정일 : 2012.6.5)

참고문헌

-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台北: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民國72年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2, 서울: 한울출판사, 2009년.
- 주식회사 호텔롯데 편, 『호텔롯데20년사』, 서울: 금석인쇄, 1993.
- 서울지방법원 판결 1970.7.2선고. <69가4652,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문
- 서울지방법원 판결 1970.7.2선고, <69가5079 가옥명도>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1.9.22선고. <70나 2471 가옥명도>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1.9.22선고. <70나 23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3.8.21 선고, <72나1156> 판결문
- 대법원 판결, 1972.4.25선고. <71다2287>판결문
- 대법원판결, 1974.4.9 선고. <73다1452> 판결문
- 손승희, 「상속관행에 대한 국가권력의 타협과 관철」, 인천대 HK 중국 관행연구사업단, 제2회 국제학회, 『國家權力과 慣行』 자료집
- 국백령, “우리는 왜 짜장면 밖에 팔 수 없었는가?”, 『월간조선』, 1991년 08월호.
- “雅敘園訴訟案新發展, 高院判定原告勝訴, 根據繼承無效·產權屬股東會”, 『韓中日報』, 1971.10.06일자.

“外人土地法 위반- 雅敘園 管理 中國人 盧씨 拘束”, 『동아일보』,
1969.01.25일자

“땅 詐欺外人 첫 구속- 雅敘園터 가로채려던 中國人”, 『조선일보』,
1969. 01.26일자

秦裕光, “화교-雅敘園의 송사”, 『중앙일보』, 1979년 11월 3일-4일자
“사라지는 서울의 명물(6)”, 『조선일보』, 1973. 05.09일자

“雅敘園 落成”, 『매일신보』, 1937.12.17일자

“雅敘園 혈값에 팔아넘긴 두 中國人에 執猶 선고”, 『동아일보』,
1974.07.19일자

“外資導入 심의委(위) 롯데, 36層 호텔 건립 借款·外人投資 6천4백
萬弗”.. 『경향신문』, 1973.04.25자

“半島호텔-舊雅敘園-국립도서관터에 日 롯데서 대규모 호텔”, 『조
선일보』, 1973년 4월 26일자

“雅敘園 소유권 싸움-한국인 勝訴판결”, 『매일경제』, 1970년 07월 03
일자.

“中國음식점 雅敘園소송 韓國人에 勝訴 판결”, 『경향신문』,
1970.07.03일자.

“雅敘園 소유권 한국인에”, 『중앙일보』, 1970.07.03일자.

“雅敘園 所有權 紛爭 韓國人 勝訴”, 『조선일보』, 1970.07.03일자.

“雅敘園所有紛爭 韓國人勝訴 地法, 辛씨의 明渡訴訟 인정”, 『동아일
보』, 1970.07.03일자.

“1억짜리 雅敘園 소유권 訴訟, 韓國人에 승소판결”, 『한국일보』,
1970.07.03일자.

“雅敘園 소유권…대법서 재상고 기각, 롯데 측에 승소확정”, 『조선일
보』, 1974.04.10일자.

“雅敍園 소유권분쟁 롯데 측에 승소판결”, 『조선일보』, 1973.08.22일자.

“雅敍園 所有訴 四年 만에 辛春浩 씨에 勝訴 判決, 서울高法”, 『동아일보』, 1973.08.21일자.

“롯데側に 勝訴확정, 雅敍園 所有權……大法서 再上告 기각”, 『조선일보』, 1974. 04. 10일자.

“롯데側 勝訴 확정”, 『매일경제』, 1974.04.10일자

“雅敍園 원주인 소유로. 패소했다 15개월 만에 승소”, 『조선일보』, 1971.10.14자

A Case Study about Chaebol and State
Power's repression to Korea-Chinese:
The A-Seo-Won(雅絃園)'s lawsuit

Lee, Yong-jae

A-Seo-Won(雅絃園) which has a glorious 64-year history, was a top-class Chinese restaurant in Korea.

It was a symbol of Chinese restaurant which is managed by Korea-Chinese. But *A-Seo-Won* disappeared in Korean-Chinese society because of unexpected legal suit with Lotte Chaebol (*Chaebol: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 1970. This is called the *A-Seo-Won* lawsuit. This case is related to various circumstances in Korea, which are the link between Chaebol and State Power, intolerant stereotype of Korean against Korean-Chinese, the tyranny of social majorities against social minorities, the conflict between Korean and Korean-Chinese, so it is possible to have an insight into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A-Seo-Won* law suit. This is why this paper focus on the *A-Seo-Won* law-suit, and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and sheds new light on the *A-Seo-Won* law-suit.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1) The history of *A-Seo-Won*, 2) The background and cause of the *A-Seo-Won's*

Lawsuit, 3) Process of the *A-Seo-Won's* Lawsuit, 4) The cause of tragic and ill-fated destiny of *A-Seo-Won*, 5) Korean and Korean-Chinese's opposite responses to the *A-Seo-Won affair*. Through this paper, I put forth a multilateral effort to investigate the *A-Seo-Won* lawsuit from various viewpoint.

On the surface, the *A-Seo-Won* lawsuit seems to gain justification through court process, but in fact, it is considered as a case that Korean-Chinese fell a victim to Chaebol and Korean State Power. The ill-fate of *A-Seo-Won* stands for hardship and tough life of Korean-Chinese. And through this, we can find significant meaning and value of the *A-Seo-Won* lawsuit.

Key Words : *A-Seo-Won*(雅絃園), Korea-Chinese, Lotte Chaebol, Lotte hotel, *A-Seo-Won* Lawsuit, Chines restaurant, korea state Power, Korea Court, victim